

에듀테크

공부혁명 엠북(mbook.kr)

M E D I C A L C A R E & H E A L T H Y



작업치료사 의료관계법규2

- ☆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노인복지법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PDF 전자책, 3시간 23분 완성

도서명 : 작업치료사 의료관계법규2

ISBN : 979-11-7393-045-4

발간일 : 2025-07-23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6,000원



작업치료사 의료관계법규2

[목차]

제1권 장애인복지법(p3)

제2권 정신건강복지법(p64)

제3권 노인복지법(p123~159)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 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권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 2025년 10월 23일 시행)

[목차]

제1장 총칙(p4)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p12)

제3장 복지 조치(p20)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p34)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p34)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p52)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p53)

제8장 보칙(p58)

제9장 벌칙(p61)

[약어]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중앙기관장은 (관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유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각급 학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16조

1.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

2. 정의

가.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 받는 자

나. 법 적용받는 장애인

1) 다음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상 장애 종류/기준에 해당

a)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등

b)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발생

2) 대통령령상 장애 15 종류

a)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래인

b) 정신장애인

- 지속적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 지속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 c)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다. 장애인학대

- 장애인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학대범죄)

- 장애인학대로서 다음에 해당

1) 형법

- 살인의 죄 중
 - 살인/존속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미수범
- 상해와 폭행의 죄 중
 - 상해/존속상해, 중상해/존속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 유기와 학대의 죄 중
 - 유기/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존속학대, 아동혹사, 유기등 치사상
- 체포와 감금의 죄 중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특수체포/특수감금
- 미수범
-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 협박의 죄 중
- 협박/존속협박, 특수협박, 미수범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 미성년자 약취/유인
-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 미수범
- 강간과 추행의 죄 중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간음/추행
- 명예에 관한 죄 중
-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신체 수색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강요, 미수범

- 사기와 공갈의 죄 중
 -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 공갈, 특수공갈, 미수범
 - 횡령과 배임의 죄 중
 -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 손괴의 죄 중 재물손괴등의 죄
- 2) 법상 금지행위
 - 3) 성매매처벌법
 - 18조의 죄와 미수범
 - 4)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
 - 5) 정보통신망법
 - 명예 훼손
 - 6)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자 유기, 시설 입원/이용자에 폭행/가혹행위
 - 7) 상기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기본이념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

4. 장애인의 권리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 받음
- 국가/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
-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 참여

5.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 국가등은 장애인 정책 결정과 실시에 있어 장애인, 부모, 배우자, 보호자 의견 수렴
-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보장

6. 중증장애인의 보호

- 국가등은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정책 강구

7.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국가등은 여성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기초학습, 직업교육 등 시책 강구

8. 차별금지 등

- : 누구든지,
- 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고,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못함
 - 나) 장애인 비하/모욕,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금지, 장애인의 장애 이해 노력

9. 국가등의 책임

- 가) 장애 발생 예방, 장애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장애인 자립 지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해 장애인 복지 향상
- 나) 여성 장애인 권익 보호 정책 강구
- 다)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보호자에 적극 홍보,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10. 모든 국민의 책임

- 장애 발생 예방, 장애 조기 발견 노력
- 장애인 인격 존중
-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해 장애인 복지향상에 협력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가. 장관은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시행

나. 내용

- 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등

다. 중앙기관장은 매년,

-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계획 수립/시행
- 장관에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 제출

라. 장관은

1)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해 종합계획 수립

- 장애인정책조정위 심의 미리 거침
- 종합계획 변경시도 같다

2) 종합계획 추진성과 매년 평가

-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 필요시 종합계획 변경 또는 다음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

2. 국회에 대한 보고

- 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해당 연도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 추진성과 평가를 확정할 때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가.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평가를 위해 총리 소속하에 둠

나. 심의/조정 사항

- 장애인복지정책 기본방향
- 장애인복지 향상 제도개선, 예산지원
- 중요한 특수교육정책 조정
-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
-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
- 장애인정책 추진 자원조달
- 장애인복지 관련 부처 협조
-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거치게 한 사항

다.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 출석/설명, 자료 제출 요구

라.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이하 실무위)** 둠

4. 장애인정책책임관

- 중앙기관장은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

지정 가능

5. 지방장애인복지위

- 장애인복지 사업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를 위해 지자체에 둠
-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6. 장애인의 날

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함

- 이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함

나) 국가등은 행사 등 사업 노력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적용 받는 장애인은 법 적용 제한

8. 국가등은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제**/재정 **관련 조치** 강구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17~30조

1. 국가등의 장애발생 예방

가) 장애 발생 원인/예방 조사 연구 촉진, 모자보건사업 강화,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강구

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환경오염에 의한 장애발생 예방 조치 강구

2. 의료와 재활치료

- 국가등은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정책 강구

3. 사회적응 훈련

- 국가등은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도록 사회적응 훈련 실시

4. 교육

가. 국가등은

- 1) 사회통합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 능력, 장애 종류/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도록 교육 내용, 방법 개선 등 정책 강구
- 2) 장애인 교육 조사/연구 촉진
- 3) 장애인에 전문 진로교육 실시하는 제도 강구

나. 각급 학교 장은

-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리한 조치못함

다. 모든 교육기관은

-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 수학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 정비 등 조치 강구

5. **직업**: 국가등은,

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정책 강구

나)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 조사/연구 촉진

6. **정보에의 접근**

가. 국가등은

1)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의사 표시하도록 전기통신, 방송시설 개선 노력

2)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 뉴스, 국가적 주요 사항 중계 등 대통령령상 방송(보도/선거에 관한 방송, 기념일 의식과 부수 행사 중계방송, 장관 고시 방송)에 청각장애인 용 한국수어나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 용 화면해설이나 자막해설 방영 요청

3) 국가적 행사,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상 행사(국경일, 기념일 의식과 부수 행사)시
- 청각장애인 용 한국수어 통역, 시각장애인 용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삽입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주최 행사에는 제공 요청 가능
- 접근성바코드는 음성변환용 코드와 청각, 촉각 등 감각을 통해 습득하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하는 전자적 표시

나.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다. 국가등은

- 1)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보급, 시청각장애인 용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파견 노력
- 2)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접근/이용 지원, 도구 개발/보급 시책 강구

7. 편의시설: 국가등은,

-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 운영 정책 강구
-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해 한국수어 통역,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 시책 강구

8. 안전대책 강구

- 국가등은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한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해,
-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 피난용 통로 확보, 점자/음성/문자 안내판 설치, 긴급通報체계 마련 등 장애인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

9. 사회적 인식개선 등

가. 국가등은 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장관에 결과 제출